#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79

발의연월일: 2021. 2. 17.

발 의 자:한병도·김승원·김진애

서영교 · 신영대 · 양기대

이수진 · 정일영 · 정태호

최기상 의원 (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

하지만 올해 초 기존 법령 개정으로 장학법인에 「지방세법」 제11 2조에 따른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부과되어 장학법인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임대업 불황으로 장학사업이 위축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한편 국립대학법인, 의료법인, 복지법인 등에 혜택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학법인만 감면 혜택 규정이 삭제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 난다는 비판도 있음.

이에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 산에 대한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경감 규정을 신설하여 장학법인의 장학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2항). 법률 제 호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2항제2호 중 "재산세"를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학법인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① (생 략)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2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	
학법인(이하 이 조에서 "장학	
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	
일까지 감면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2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	
재 해당 임대용으로 사용하	
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u>재산</u>	<u>재산</u>
<u>세</u> 의 100분의 80을 각각 경	세(「지방세법」 제112조에
감한다.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